

대전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8나114554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8나11455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11067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효성

담당변호사 오지혜, 조승원, 한상연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용섭

변론 종결 2020. 3. 31.

판결 선고 2020. 4. 2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11067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에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한 소외 회사 설립시 원고와 피고가 각 50%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주명부(갑3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 등 금원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갑5호증)과 문자(갑6호증) 등 증거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태영

판사김선용

판사이경희